

청주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1가단703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규철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겸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9. 4.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91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8. “B는 원고에게 26,522,981원 및 그 중 25,727,722원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2006. 3.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9. 11. 29.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구상금,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B의 부(父)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9. 4.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 D, E, 피고, F, G, B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딸 H의 남편(망인의 사위) I, H의 자녀(망인의 손자) J, K, L, M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대습상속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

○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3. 피고 명의로 ‘2019. 4.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10. 채무자 B, 근저당권자 N조합(이하 ‘N조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10. 14.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O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917호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이에 살피건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¹⁾인 1/7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B의 N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여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N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B의 대출금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다.

따라서 B는 망인이 변제하여 준 채무액 만큼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수익에 의하여 B의 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

결과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부분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의 N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2003. 5. 6. N조합으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2008. 7. 1. 위 대출 원금 중 35,000,000원이 상환되었고, 2011. 5. 19. 나머지 원금 20,000,000원이 상환되어 위 대출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11. 5. 19.의 20,000,000원 채무 상환을 B가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2008. 7. 1.의 35,000,000원 채무 상환은 망인이 하였을 것이라면서 B가 망인으로부터 위 35,000,000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그 전제(B의 특별수익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 대신 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구하므로,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 상속분은, 망인의 자녀 D, E, 피고, F, G, B는 각 1/7, 먼저 사망한 딸 H의 남편 I은 $3/77 (= 1/7 \times 3/11)$, H의 자녀 J, K, L, M은 각 $2/77 (= 1/7 \times 3/11)$ 이다.

